04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역사의 한 장면

청·일 전쟁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비가 일본에 무참히 살해되었고, 국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죠. 이에 나라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대한 제국이 성립하였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죠.

황제권을 강화한 고종은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Q 이 시대를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가)~(라) 중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고르고,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

1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 러·일 전쟁 풍자화(『Le Petit Parisien』, 1904. 4.)

주제 열기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진 링 위에서 덩치 큰 러시아인과 왜소한 일본인이 맞붙고 있다. 러시아인과 일본인은 각각 한 발을 한반도에 내딛고 있다. 링 밖에서 거만한 자세로 영국인과 미국인 등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반면, 경기장 담벼락에 매달려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이 안쓰럽게 보인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이를 견제하는 러시아의 갈등은 삼국 간섭과 아관 파천 등을 거치면서 점점 고조되었다.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부담을 느끼던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정세는 대한 제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일본,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하다

청·일 전쟁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러·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로 결국 러·일 협상은 결렬되었다.

고종은 양국 간에 전운이 감돌자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제물포와 뤼순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서울에도 난입하였다(1904. 2.). 또한 한국 내에서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은 한국에 재정·외교 고문을 추천한다는 조약(제1차 한·일 협약, 1904. 8.)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사료 톡톡

한·일 의정서(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 『고종실록』, 1904. 2. –

▼ 서울에 입성하는 일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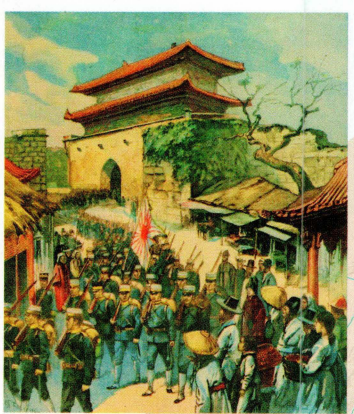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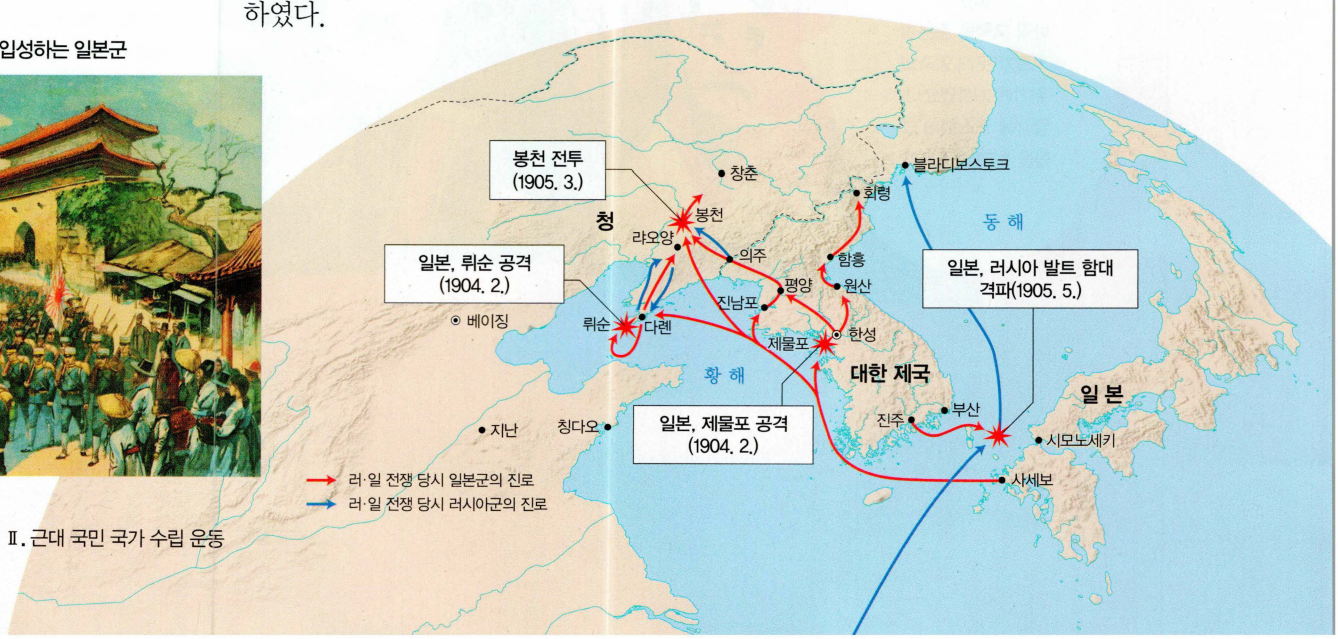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다

일본은 전쟁 중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독도를 자국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한 후(1905. 2.),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동해에서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곧이어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비밀 협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가로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다. 영국과도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 무렵 일본은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으며, 러시아도 국내 사정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에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다(190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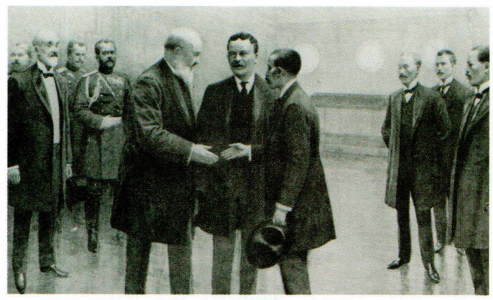

▲ **포츠머스 조약** 미국 대통령이 러·일의 전권 대표 사이에서 악수를 권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을사늑약을 강요하다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은 군대로 궁성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부 대신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일본은 박제순,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 성립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1905. 11.).

공식 명칭도 없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강탈당하였다.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장악하였다.

▼ **한·일 협약도(韓日脅約圖, 『신한민보』)** 제목의 '협(脅)' 자는 위협한다는 뜻이다. 칼을 든 일본 군인이 고종을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속 역사 이야기 국제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을사늑약

파리 대학의 국제법 학자 프랑시스 레이는 「대한 제국의 국제법적 지위」(1906)라는 논문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1905년의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한다."라고 단언하였다.

프랑시스 레이는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이 있었고, 조약의 이름뿐 아니라 서명자에 대한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 절차와 승인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 국서를 해외 언론에 보냈다는 점, 일본 특파 대사의 보고서 초안에도 고종의 조약 반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을사늑약은 체결 당시에도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한편 레이의 논문 등에 근거하여 국제 연맹은 「조약법(Law of Treaties)에 관한 보고서」(1935)에서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 중 하나로 을사늑약을 선정하였다.

▲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 선언(1907. 1. 16.)** 영국의 신문에 실린 기사를 재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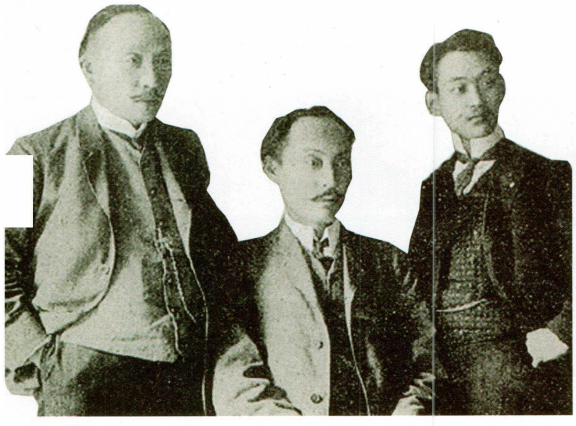

▲ **헤이그 특사**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다.

▲ **일본군에게 무장 해제된 대한 제국군 병영** 연병장에 압수된 대한 제국군의 무기와 장비가 보인다.

고종 황제가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각계각층에서 저항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고종도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거중 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에 지원을 호소하였지만,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도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으나 일본과 영국 등 열강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 후 일본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7.)을 강요하여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곧이어 군대마저 강제 해산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사법권(1909)과 경찰권(1910)을 박탈하는 등 병탄의 수순을 밟아갔다. 한편 친일 단체인 일진회는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고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속 자료 지식백과 침략성을 숨기고 한국의 멸망을 표현한 용어, '병합'

> '합병'이라는 문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병탄'이라는 용어는 침략적이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결과 나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병합'이라는 문자를 새롭게 고안해 냈다. 이것이라면 다른 영토를 제국 영토의 일부로 삼는다는 의미가 '합병'보다 강하다.
>
> – 일본 외무성 정무 국장 구라치 데쓰키치, 『한국 병합의 경위』 –

일제는 한국 강점을 앞두고 침략성을 숨기면서도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 흡수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만들고자 하였다. '병탄'은 사실에 맞지만, 침략성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합병'이란 글자를 바꾸어 '병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 용어를 고안해 낸 구라치는 일찍이 『국제 공법』(1899)에서 "조약의 체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이 가해졌을 때는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은 결코 유효하지 않다."라고 썼다. 이처럼 폭력과 위협에 의한 조약 체결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 새로운 용어까지 고안해 냈다.

▲ **3대 통감에 부임하는 데라우치 행렬(1910. 7.)** 한 달여 뒤에 데라우치는 한국을 병탄하고 초대 조선 총독이 되었다.

한국, 일제에 강점당하다

일제는 한국인의 격렬한 반일 항쟁을 무력으로 억압하였다.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이른바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1910. 8.). 이 조약에는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는 강압으로 이루어진 '병탄'일 뿐이었다.

이처럼 대한 제국의 멸망은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침략에 그 원인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통합과 국력 증진을 도모하지 못한 집권층의 책임도 크다.

일제의 한국 강제 점령은 한국인이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빼앗아 갔고,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일제를 몰아내고,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 **일제의 한국 강점 풍자화**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지도에서 한국을 떼어내고 있다.

탐구 일제의 한국 국권 강탈 과정과 불법성

자료 ① 을사늑약(1905. 11.)

제2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자료 ② 한·일 신협약(1907. 7.)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자료 ③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1910. 8.)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에 기재된 양여한다는 것을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문서** 오른쪽 문서에는 일왕의 서명과 어새가 찍혀 있는데, 왼쪽 대한 제국 황제의 비준서에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되는 어새만 찍혀 있고 순종의 서명도 빠져 있다.

활동

❶ 〈자료 1, 2〉의 각 조약에서 일제가 강탈한 권리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❷ 〈자료 3〉을 보고 '병합' 조약의 불법성을 설명해 보자.